

✉ 이 메일은 김시준 회원님에게 발송된 메일입니다.
(2023년 07월 28일)

처리결과 알림

민원번호	1AA-2307-0847179
신청일	2023-07-21 15:37:31
신청인 구분	개인
주소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상황 통보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누리집(홈페이지), 휴대전화)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민원제목	전기저장 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문의
민원내용	<건설현장 피크저감용 ESS 시설의 소방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건설현장 피크저감용 ESS 실증”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방기준과 관련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2월 시행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에

따르면 전기저장시설의 경우 기본적으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시설 (1제곱미터에 분당 12.2리터 이상의 수량을 균일하게 30분 이상 방수)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운용하고자하는 전기저장장치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23년 10월부터 24년 9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실증 연구용 시설로 발전소 또는 일반 건축물 환경이 아닌 공사현장에서 피크저감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사항으로, 사업이 목적인 영구 준치형 구조물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임시전기저장시설에서 NFSC 607에서 제시하고 있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안을 모두 따라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유선상 통화내용 중 질문 주셨던 전기사업법 61조, 전기안전관리법 8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 본 실증연구 사업에서 사용되는 전기저장장치는 전기사업의 목적이 아닌 한시적 실증 연구용 임시가시설(공사현장내 20피트 컨테이너)에 해당하며,
- 본 실증연구 사업은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사업을 통해 아래 첨부내용(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과 같이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제특례 받아 시행됨에 따라 말씀주신 두 법령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건설현장 피크저감용 ESS 시설의 소방기준 문의.pdf
------	--------------------------------

처리결과

처리기관 정보	나의민원으로 가기
처리기관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담당자	이철승
민원인 신청번호	1AA-2307-0847179
접수일	2023-07-21 17:21:10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07-0853724
처리에정일	2023-08-09 23:59:59.0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23-07-28 17:21:54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307-0847179/2AA-2307-085372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 "전기저장시설 화재안전기준 적용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답변: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로, 산업통산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공사현장 내 한시적 실증 연구용 임시가설시설로써, 「전기사업법」제 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제8조에 따른 전기저장시설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적용 전기저장시설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와 소방기술민원센터 소방위 이철승(전화번호 : 044-205-7549)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6.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7.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민원신청서.htm

민원처리과정 만족도조사 (소방청)

 이미 만족도조사에 응모하셨을 경우 다시 응모하셔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족도 평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